



# ‘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’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

- 환경부 자료 제공 -

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(라벨)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‘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’ 일부개정령(안)을 행정예고했다.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## ‘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’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(라벨)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
- 나.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–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

– 전자우편/팩스 : lkylky@korea.kr/ 044-201-7130

라.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 법령/정책/ 환경법령/ 입법 · 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음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(전화 044-201-7118, 팩스 044-201-71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**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**

「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한다.

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소포장 제품”이라 함은 「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.

7. “포인트(point)”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(글자의 기준치수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포장”을 “포장(용기 또는 병마개에 부착하는 경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주 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4조제5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활자”를 각각 “글자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활자크기”는 제품명 활자크기(가장 큰 활자크기)를 “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(가장 큰 글자크기)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“활자크기”를 각각 “글자크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호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한 포장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소포장 제품에 한하며, 다음사항을 용기표면에 알기 쉽게 표시(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)하여야 한다.

가) 제품명

나) 유통기한

다) 전화번호



라) 수원지(시·도/시·군·구/읍·면·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.)  
제15조제1호 중 “활자”를 “글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"소포장 제품"이라 함은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종합제품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.</p> <p>7. "포인트(point)"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(글자의 기준치수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.</p>
<p>제14조(표시방법)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제13조제1호, 제13조제2호,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, 제13조제1호를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5.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6.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수원지 위치,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</p>	<p>제14조(표시방법)----- 1. ----- 포장(용기 또는 병마개에 부착하는 경우)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다만,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글자 -----</p> <p>6. ----- ----- ----- 글 자 -----</p>

<p>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·판매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다목 및 라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품목명 및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(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)의 1/2이상 크기(높이와 폭을 말한다)로 표시하여야 하며, 도로명, 건물번호(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/리, 지번)는 1/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다.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/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,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라. (유통전문)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(유통전문)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,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(가장 큰 글자크기)----- -----.</p> <p>다. ----- <u>글자크기</u>----- -----.</p> <p>라. ----- <u>글자크기</u>----- -----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1의2. 제1호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한 포장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소포장 제품에 한하며, 다음사항을 용기표면에 알기쉽게 표시(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)하여야 한다.</p> <p>가) 제품명 나) 유통기한 다) 전화번호 라) 수원지(시·도/시·군·구/읍·면·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.)</p>
<p>제15조(표시사항의 적용특례)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 15 조 ( 표 시 사 항 의 적 용 특 례 )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재활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수원지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1. ----- ----- -----</p>
<p>2. (생략)</p>	<p>----- <u>글자</u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